

국토교통 분야 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 추천기업 선정 수정 공고

정부는 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금융·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,

국토교통부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1

「혁신 프리미어 1000」 개요

- (혁신 프리미어의 정의)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, 신제품 개발, 매출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의미
 - * 현재는 성장초기단계라도 핵심기술 등을 보유하여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
- (범위·기준) 영위·계획사업이 『혁신성장공동기준』에 부합하면서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·중견기업
- (지원기간) 선정시~익년말(금번 선정시, '26년말까지 지원)
 - ※ '혁신 프리미어'로 선정되더라도,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- 지원 내용
 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·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중소·중견기업 선정(매년 상반기 중 총 500개 선정)
 - (금융지원)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現 정책금융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를 지원
 - (비금융지원) 민간투자 유치·해외판로 개척·박람회 참여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(세무·회계·인사·노무 등) 등 비금융 지원 강화

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·중견기업으로서, 혁신성·성장성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**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**(붙임1)
 - ①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
 -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, 최근 3년 매출액,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% 이상 증가 기업
 - ③ 국토교통 분야 산업부문 특성을 고려하여,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

《 신청자격 제외 사유 》

※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선정에서 제외됨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, 경영자 평판(횡령, 배임 등)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(연체, 부도, 파산, 회생 등)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
- 중소·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(M&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), 폐업,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“한정” 이하인 경우
(단,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)
-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
-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$\triangle 10\%$ 이상인 기업
-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인 기업

* 단, 최근 2년 이내에 ‘적격투자기관’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은 적용 제외(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,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)

※ 적격투자기관: 「벤처기업육성특별법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(1)~(7)에 해당하는 기관(한국벤처투자, 은행, 산·기보 등)

3

선정 기준 및 절차

- (선정 규모) 국토교통 분야 중소·중견기업 20개
- (평가 방법) 2단계 평가
 - (1단계)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재무상태,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부합여부 등 요건 심사
 - ※ 결격 여부, 최소 요건 적정성(신용등급, 경영위험, 안정성, 유동성 등)
 - (2단계) 혁신성/성장가능성 평가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점수
혁신성 (60)	혁신활동의 우수성	- 신제품, 서비스 개발 등 기업주력 활동이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품목 부합 여부 -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발굴,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실적 - 기술개발 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	30
	기술의 우수성	-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- 핵심기술의 우위성(혁신성, 차별성, 모방난이도) - 진입장벽, 시장경쟁력, 산업적 중요성, 수출가능성 등	30
성장 가능성 (40)	기업 자원 확보 노력	- 최근 3년간 매출액, 수출액,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현황 - 인력, 시설, 장비,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- 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	15
	성장 잠재력	-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- 매출증대 및 시장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
	지속성장 가능성	- 환경보호(Environment), 사회공헌(Social), 윤리경영(Governance)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관련 노력	5

※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추천기업으로 선정

4

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'25. 1.20.(월) ~ 3.7.(금)
- 접수기간 : '25. 2.10.(월) ~ 3.7.(금)

- 신청서류
 - 공문(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)
 - 신청서
 - 전략계획서
 - 기업(개인)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등
 - 중소기업확인서*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
 -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sminfo.mss.go.kr) 발급
 - **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fomek.or.kr)에서 발급
 -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(2021년~2023년)
 - ※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
 - 신기술 인증서, 혁신제품 지정서, 매출실적 등 신청자격 증빙사본(해당시)
 - 민간투자 또는 적격투자기관 투자 관련 서류(해당시)
 - ※ 민간투자, 적격투자기관 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, 주금납입증명서, 주주명부, 투자확인서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
 - ESG 자가진단 보고서(pdf 파일)
 - ※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(<https://hub.kaia.re.kr/esgself.do>)에서 무료진단 제공
- 접수방법 :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(hub.kaia.re.kr)에 온라인 접수
-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사업화지원Hub실
고승범 선임연구원(031-389-6568, 6343)

5 기타사항
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 - ※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- 선정절차 및 선정후 제출서류 이외 금융·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'혁신 프리미어 1000'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(대출·보증)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을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

붙임1

신청자격

☐ 기본요건을 충족하고, 선택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

구분		내용	증빙자료	해당 여부	
				Y	N
기본요건		혁신성장 공동기준 포함품목 취급	-	✓	
선택요건	1. 혁신성	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	투자확인서		
	2. 성장성	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, 최근 3년 매출액,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% 이상 증가 기업	최근 3개년 재무제표		
	3. 국토교통 분야산업 부문 특성을 고려하여,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	3-1. 건설·교통·물류 신기술 또는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신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	인증 또는 지정서, 매출실적 증빙자료		
		3-2.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			
		3-3. 국토교통부 소관 법정 품질인증 확보기업*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			
		3-4.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**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연구성과물***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	(과제수행) 확인서, 매출실적 증빙자료		
		3-5. 국토교통부 소관 시범/실증사업 참여기업****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			

※ 기본·선택요건 해당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간 범위 내 유효해야하며, 요건의 입증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* 국토교통부 소관 법정 품질인증 :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·기술 보유기업

**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5년 이내 기업

*** 유형적성과물(시제품, 시작품 등), 무형적성과물(특허권, S/W, 저작권, 실용실안 등)

****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실국에서 추진하는 시범/실증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기업